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334호
2. 발 의 자 : 박강산 의원
3. 발의일자 : 2023. 10. 16.
4. 회부일자 : 2023. 10. 23.

II. 제안이유

-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2. 장애인 공무원의 권리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
3.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제7조).

4.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기 타
 - 입법예고(2023.10.26. ~ 10.30.)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박강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334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정부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를 비롯한 사회 전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Reasonable Accommodation Duty)’¹⁾를 법제화하였습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²⁾ 「장애인 차별금지법」

1)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미국의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에서 연방정부에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민간영역과 타 국가로 확산되었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의 영향으로 현재 주요 선진국 대부분에 도입되어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온전히 향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경우 필요하다면, 불비례적이거나 과도한 부담(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필요하고 적합한 변경 및 조정(modification and adjustments)을 하는 것”(협약 제2조)으로 정의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나 고용의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은 유럽연합의 고용평등지침이나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사례에 근거해 볼 때 임금이나 경력개발 기회의 평등, 장애로 인한 불이익의 감소를 동반하는 직업생활 지원, 직업생활 중 장애에 따른 차별 발생 시 구제 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 오욱찬 등 5명,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8-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정리한 것임.)

2) 장애인고용공단은 2013년 중증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을 문의하였으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고, 해당 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항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장애

위반이라고 결정하면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제공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³⁾

이러한 배경에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시책은 2015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⁴⁾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 이어 2016년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었고, 2023년 현재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표 1]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현황⁵⁾

지역	조례명	제정 시기(최초 공포일)
서울	×	×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2016.09.28.
대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12.20.
인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20.01.02.
광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8.10.15.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02.10.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09.2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12.20.
경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06.14.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12.22.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09.29.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12.30.

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면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편의제공의 법률적 근거를 안전행정부 장관이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권고를 내린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2013, 제6집), 198-210쪽 참조)

- 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2013. 11. 12).
- 4)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288호, 2015.5.18. 일부개정)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292호, 2015.5.18., 일부개정)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의미함.
- 5)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을 통해 검색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검색일 2023.12.9.~12.10.)

지역	조례명	제정 시기(최초 공포일)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6.05.13.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9.05.02.
경북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8.10.01.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9.02.0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017.08.16.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이처럼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⁶⁾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총 301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안내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의 자체 사업이나 근로 지원인 지원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2]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내 장애인 공무원 현황(소속기관별)⁷⁾

(단위 : 명)

연도	장애등급	본청	교육 지원청	학교	직속 기관 등	소계	계
2021년	경증	17	18	179	25	239	278
	중증	1	4	28	6	39	
2022년	경증	17	18	189	25	249	291
	중증	1	4	29	8	42	
2023년 (12.1.기준)	경증	13	18	197	24	252	301
	중증	0	6	34	9	49	

6)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3421번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현황”(총무과, 2023.12.7. 작성)

7) 위와 같음.

-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보장을 위한 편의지원 정책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과⁸⁾ 「장애인 차별금지법」⁹⁾ 의 취지에 맞는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편의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제6조와 제7조에서 각각 지원대상과 지원제한 대상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서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에서 지원기관에 대한 감독, 제10조에서 예산의 집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안 제9조와 제10조, 제11조의 조 제목이 각각 “전문기관의

8)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9)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 및 운영 등”, “감독”, “예산의 집행 등” 인 것과 관련하여 해당 조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각각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예산의 지원 등” 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정의에 대한 의견(안 제2조)

- 안 제2조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공무원,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2조제1호는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장애인 공무원을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장기간 장애를 이유로 직업생활의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장애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문에 따르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 공무원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일반직 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과 국가공무원(교원)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조례안은 목적 규정에서 관계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¹⁰⁾ 고려할 때 동 조문의 공무원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3명에게 국가공무원인 장애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편의지원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¹¹⁾ 3명 모두 “교원의 편의 지원을 위한 사항 역시 법령으로서

1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관련

11) 장애인 교원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2022.10.26.)에 대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회신 결과(2022.11.10. 회신)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임.

다뤄야 할 사항이므로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표 3]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구분	제정 가능 여부	의견에 따른 주요 논거
A	제정 불가	- 대법원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라고 판단하고 있고, 장애인 교원의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할 소지가 있음.
B	제정 불가	- 대법원은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국가사무로 판단고, 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함. - 장애인 교원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지원인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은 국가사무에 해당할 것인바 법령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C	제정 불가	-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장애인 교원 대상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등)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중 권익보장에 해당되므로 국가사무인 교원에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해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할 소지가 있음.

○ 그러므로 입법목적과 자치법규 제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장애인 공무원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에 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바, 장애인 공무원의 정의 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 담당관-15379, 2023.10.27.)¹²⁾.

3) 기본원칙 및 책무에 대한 검토(안 제3조~제4조)

1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5379, 2023.10.27.) 관련

○ 안 제3조는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는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감에게 부여한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안 제3조는 장애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편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안 제4조는 앞서 제시된 해당 원칙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장애인 공무원의 차별 방지 및 권리구제, 편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두 조문은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공되는 시혜적 조치가 아닌 장애인의 권리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사용자인 교육감에게 편의 지원을 위한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특히, 교육감에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자체 예산을 통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정책이 부재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는 장애인 공무원이 편의 지원을 요청하면 장애의 유형과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 지원의 유형으로서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인사혁신처가 2023년 4월 발간한 「2023년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서 열거된 편의지원의 내용과 행정자치부가 2015년 배포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편의 증진 조례 표준안」에서 규정된 편의 지원의 기준 등에 기반을 둔 것인바,

해당 조문이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있어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4]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의 범위(유형)¹³⁾

조례안	2023년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인사혁신처, 2023.4.)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편의 증진 조례 표준안 (행정자치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근로 지원인 배정 -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상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 -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경사로 설치, 주차공간 제공, 장애인 화장실, 회의실·식당 등의 접근성 제고,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인적지원 : 통역보조인 배치, 근로지원인 지원 등 - 근무여건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지원인 배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 -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 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 2180-8264
----------	------------------	-------	------------------

13) 인사혁신처(2023.4.20.)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2023년 개정판)」과 행정자치부(2015)가 전체 시도에 배포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4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8. (생략)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용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30.] [대통령령 제33367호, 2023. 3. 30., 일부개정]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
|---|